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938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구합64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6.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5,344,650원의 부과처분 중 30,308,8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9. 4. 원고 B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대하여 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0,994,260원의 부과처분 중 26,077,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1. 16. 원고 C에 대하여 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0,046,580원 중 24,674,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별도합산과세대상 조문 중 '가'목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나'목의 경우 건축 중인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나'목에 의한 이 사건 토지도 부과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인 · 허가 후 착공이 개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를 공사가 완료된 토지로 보아 산정한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를 공사가 완료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정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목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가'목과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운전학원부지인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또는 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할 뿐,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시지가 산정에 관하여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은 Ⅱ.토지특성조사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⑭ 토지이용상황 중 ㉯ 토지이용상황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용도에 맞추어 조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록Ⅱ. 일단지의 조사 중 182페이지에사 '건축중인 토지의 일단지 조사 적용시점은 공사를 착수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공사가 착공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가일 뿐, 이를 공사가 완료된 토지로 보아 산정된 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